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송허가결정 공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5조에 의한 소송허가결정이 있었음을 공고합니다.

1. 사건의 표시

-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기2787, 2014카기10064(병합), 2014카기10065(병합) 소송허가사건
- 나. 원고(대표당사자) : 김지운
신청대리인 변호사 변환봉
- 다. 피고 : 장철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율전 담당변호사 배진혁, 이언주
유왕돈
신청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홍지욱
주식회사 진매트릭스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황혜진, 이주용, 김지혜
- 라. 주문 : 이 법원 2013가합107585, 2014가합100086(병합), 2014가합100093(병합)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2. 총원의 범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진매트릭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그 주가가 영향을 받은 기간인 2010. 12. 30.부터 2011. 1. 26.까지 및 2011. 2. 9.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유통시장에서 위 주식을 위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주가(별지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중 '정상주가'란 기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매수 위탁하는 등으로 취득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다만 위 시세조종기간 중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후 매수가격 이상으로 매도한 결과 손해가 없게 된 자들은 총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청구의 취지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청구원인

1) 피고들은 2010. 12. 30.부터 2011. 2. 28.까지 주가부양을 통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피고 진매트릭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고가매수, 가장·통정매매 등을 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제1, 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시세조종행위 또는 같은 법 178조 제1항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총원에게 총원이 위 시세조종기간 중 유통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정상주가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취득함으로써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총원이 입은 손해는 최소 30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4. 제외신고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내에 이 법원에 제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참고사항

소송허가결정은 본안소송의 진행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피고들의 즉시항고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참여관 조민정

* 전화 : 02-2192-1222, 팩스 : 02-2646-7153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재판장 판사 신혁재

별지

<시세조종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의 주가 및 정상주가 내역>

(단위 : 원)

일자	주가	정상주가
2010. 12. 30.	7,890	6,130
2011. 1. 3.	7,910	6,262
2011. 1. 4.	7,950	6,316
2011. 1. 5.	8,010	6,354
2011. 1. 6.	8,100	6,405
2011. 1. 7.	8,050	6,458
2011. 1. 10.	8,200	6,529
2011. 1. 11.	8,300	6,519
2011. 1. 12.	8,390	6,553
2011. 1. 13.	8,400	6,535
2011. 1. 14.	9,120	6,546
2011. 1. 17.	9,220	6,505
2011. 1. 18.	8,850	6,419
2011. 1. 19.	8,550	6,485
2011. 1. 20.	8,900	6,475
2011. 1. 21.	8,990	6,325
2011. 1. 24.	9,020	6,342
2011. 1. 25.	9,000	6,248
2011. 1. 26.	7,650	6,266
2011. 1. 27.	6,510	영향 없음
2011. 1. 28.	6,360	"
2011. 1. 31.	6,410	"
2011. 2. 1.	6,420	"
2011. 2. 7.	6,470	"
2011. 2. 8.	6,620	"
2011. 2. 9.	7,610	6,250
2011. 2. 10.	7,910	6,184
2011. 2. 11.	8,040	6,072
2011. 2. 14.	7,910	6,114
2011. 2. 15.	8,490	6,110
2011. 2. 16.	8,900	6,073
2011. 2. 17.	9,200	5,920
2011. 2. 18.	9,140	6,036
2011. 2. 21.	9,800	6,070
2011. 2. 22.	9,670	5,910
2011. 2. 23.	9,840	5,819
2011. 2. 24.	9,600	5,707
2011. 2. 25.	8,160	5,831
2011. 2. 28.	7,460	5,738